

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

Collaborative Search Program(CS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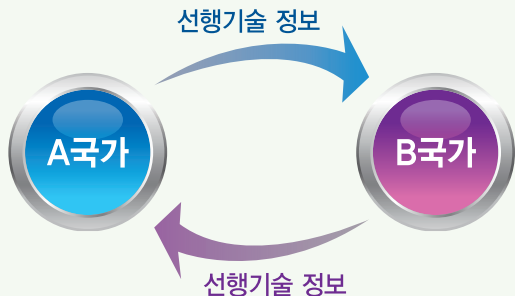


개 념

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,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여 다른 출원건 보다 빨리 심사

시행현황

한-미 CSP 1차사업('15. 9. 1. ~ '17. 8. 31.)
한-미 CSP 2차사업('17. 11. 1. ~ '20. 10. 31.)



출원인 혜택

-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강한 특허권 확보
-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,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 취득
- CSP 이용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 미부여
- 동일발명에 대한 국가 간 일관된 심사결과
- 최종 특허여부에 대한 향상된 조기 예측가능성

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, 특허청 CSP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(☎ 042-481-5400)

(한국 특허청) <http://www.kipo.go.kr/csp/>, (미국 특허청) <http://www.uspto.gov>



▶ 한-미 CSP 신청요건 ◀

1.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
2.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
3.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
4.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
5.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
6. 최우선일이 '13.3.16. 또는 그 이후일 것
7.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 (독립항은 3개 이하)
8.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(미국특허청 신청요건)
9.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

▶ 한-미 CSP 절차도 ◀

